

영등포구의회
제15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0. 4. 15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65호로 2010년 3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되어 시행에 따른 제명 정비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정하고, “새주소위원회”를 “도로명주소위원회”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등의 변경.

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, 제7조부터 제10조까지, 제21조)

	현 행	개 정 안
제 명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
용 어	도로명사업 도로명시설 건축물 등	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시설 건물등

나. 「새주소위원회」 명칭 및 설치근거 변경. (안 제17조)

명칭	현행	→	개정안
	새주소위원회		도로명주소위원회
설치근거	영 제26조	→	법 제22조의2

다.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

-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‘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’을 ‘법에 의한 도로명’으로 변경. (안 제5조)
 - 도로명주소는 사업에 의한 경우 외에도 부여되기 때문에 자구 수정하여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도로명 적용 가능.
- 도로명주소시설물의 낙하, 관리하자 등 발생으로 타인에게 인적·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등 가입근거 규정 신설. (안 제11조)
-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영에 규정(제18조)됨에 따라 광고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. (안 제12조)
 - 도로명주소안내판 :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.
 - 도로명주소안내도 :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 가능.
- 종전의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명칭 변경. (안 제16조)

안내시설	현행	→	개정안
	새주소 안내도 부착,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		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,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

라.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.

-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(안 제3조), 원인자 부담금(안 제4조)을 수입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함.

마.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“삭제”하는 사항

내 용	현행 조례조문	이관된 법령의 조문
○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- 요건 : 시장등 필요, 주소사용자 1/5 신청 - 절차 : 위원회 심의, 주소사용자 1/2 서면동의	제3조 제4조	영 제7조의3
○ 도로명주소 고지·고시절차 - 2회 방문고지 후 서면고지 실시	제5조	영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
건물번호판 표준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규격	제6조 제7조	법 제8조의4,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
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절차	제9조 제10조	영 제12조의2
도로명주소기본도 작성가 포함되어야 할 사항 - 철도, 하천, 교량 등 배경자료	제13조	영 제10조 제1항 10호
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의무	제14조	법 제8의3, 도로명주소대장규칙
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	제19조	영 제18조
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	제26조	법 제22조의2 제4항

4.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: 도로명주소법, 도로명주소법 시행령.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2009년 4월 2일 「도로명 주소법」으로 제명 및 일부내용이 개정되었고,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은 2009년 7월 2일 「도로명 주소법시행령」으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가.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 등의 변경.

- “도로명사업”을 “도로명주소사업”으로, “도로명시설”을 “도로명 주소시설”로,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”로 변경하였음.

나. 법령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

- 도로명 주소는 사업에 의한 경우 외에도 부여되기 때문에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도로명을 적용하였음
- 도로명 주소시설물의 낙하, 관리하자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공제회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

다.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명 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음

라.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, 도로명 주소 고지·고시절차, 시군구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기능 등은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였음

-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